

정보공개 길라잡이

<https://iadmin.open.go.kr>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제1장 정보공개 제도 이해하기	5
Ⅰ. 정보공개 제도의 개요	6
Ⅱ.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8
Ⅲ. 정보공개 제도의 원칙	9
Ⅳ.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의무	11
Ⅴ.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19
 제2장 공공정보의 사전제공	 21
Ⅰ. 원문정보 및 정보목록	22
Ⅱ. 사전정보공표목록	27
Ⅲ.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31
Ⅳ. 학교형 표준안	46
1. 사전정보공표목록	46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55
 제3장 정보공개 청구 처리하기	 59
Ⅰ. 정보공개 처리 따라 하기	60
Ⅱ. 정보공개 결정 처리 방법	61
Ⅲ. 공개등 결정관련 통지 예시	78
1. 복합청구 시 결정 방법	78
2. 공개 결정	78
3. 유사 공개 결정	80
4. 즉시공개 결정	81
5. 부분공개 결정	82
6. 비공개 결정	86
7. 부존재 결정	111
Ⅳ. 기타 결정별 통지 예시	115
1. 이의신청	115
2. 이송	118
3. 청구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	122
4. 제3자 의견서	123
5. 민원이첩 안내문	124
Ⅴ.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125

정보공개 길라잡이

WWW.OPEN.GO.KR

제1장

정보공개 제도 이해하기



I 정보공개 제도의 개요

1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 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정보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란?

»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
 - ※ 일반적 청구권 : 교육청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
 - ※ 개별적 청구권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청구권

2 정보공개 제도 관련 법령

- ⑤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⑤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경상남도교육 훈령 제155호)

3 정보공개 제도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1992. 1. 4.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1994. 7. 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2003. 6. 24.	•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
2004. 1. 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자적 정보공개 근거 마련,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제 도입,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기준 도입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정보공개법 적용기관 구체화(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등) – 정보공개 방법 확대(전자우편, 저장매체 저장 제공 등)
2006. 4.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 – 중앙·지자체·교육청 등에 대한 인터넷 정보공개청구 가능
2006. 10. 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의무화
2008. 2. 29.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책임 행정 강화) – 대통령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2011. 10. 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정보 사전공개 활성화 –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운영 등
2013. 8. 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공개 대상정보의 원문공개('14. 3. 1.시행)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상향 및 설치 의무기관 명확화 – 신분보장,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 권고 등
2014. 12. 1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2017. 12. 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파일 수수료 무료
2019. 12. 3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주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 통합공개 근거 기준 마련

II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2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및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3 국정에 대한 신뢰 제고

-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 결정 정당성 확보와 책임 행정 구현

4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5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III 정보공개 제도의 원칙

1 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두 8827)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알 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알 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 하여야 함.

(서울행법 2002구합33943)

2 예외적 비공개

- ㉠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8호)
- ㉡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과 이를 비공개하여야 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수립 · 공개(법 제9조 제3항)

3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법 제4조 제1항)

- ㉢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법 간 충돌 · 모순 해소를 위함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는 사유로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 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

(대법원 2007두 2555)

- ※ 다른 법률 :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건축법(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법(주민등록 등 · 초본),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형사재판기록), 의료법 등

4 정보공개법 적용 관련 유의사항

-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며, 정보공개 · 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로만 결정
- ㉤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안내

- ※ 안내 방법 :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별지 제4호의2)를 활용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 문서로 안내

※ 제4조 제1항 vs 제9조 제1항 제1호 비교

구 분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 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	정보 비공개 결정의 사유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 민사소송법 제162조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등
효 력	-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 · 열람 등 가능 ※ 공개대상 · 범위 · 절차 및 비공개 대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되어야 함	- 정보공개법 적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함

IV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의무

1 대상기관

가. 국가기관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감 협의체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면·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법제처 법령해석 06-0038)

다.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19. 1. 30일 기준)
※ (공공기관 지정 현황 소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서 공공기관 현황 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라목)

-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행령 제2조 제1호)
 - 유아교육법 :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 유치원 등
 -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대안학교)
 - 고등교육법 : 대학(사립대학 포함),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됨.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됨.

(대법원 2004두2783)

- 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광주과학 기술원, 국군간호사관 학교, 국방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시행령 제2조 제2호)

- ⑤ 도시철도, 도시개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산 관광공사 등 기타 공사, 시설·환경·경륜 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기관이나 출연기관

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법제처 09-0161), 한국증권업협회(대법원 2010.4.29. 2008 두5643), 지역조합(상주축산업 협동조합) (대구고법 2008누21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법제처 11-0261), 대한기술사회(법제처 07-0188), 주택관리공단(주) (법제처 07-0319), 건설공제조합(법제처 07-0323), KT(법제처 08-0442), 대한 변호사회, 재개발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판단하는 기준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10. 4. 29. 2008두5643, 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자. 각종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2 공공기관의 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가. 정보공개 의무(법 제3조)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제2항)

-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 정비
-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 정비
- ㉠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
 - ※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 개설, 편리한 접근성 보장 등

다. 행정정보의 공표 등(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 ㉠ 공공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 행정정보(사전정보) 공표 대상
 - 1)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정보 등

- » (기본 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 » (통계·조사)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 » (법령 정보) 법령(조례, 지침 포함), 입법예고안, 국회 제출 법률안
- » (기 타) 국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교육 · 의료 · 교통 · 조세 · 건축 · 상하수도 · 전기 ·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 (의료 · 사회보장) 노인 · 아동 ·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각종 생활 보장 급여 수급 기준 등
- » (교통) 교통 영향분석 평가 결과, 자전거 도로 현황 등
- » (조세) 국 · 지방 제세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공시지가 등
- » (주택 · 건설)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건축허가 · 착공 통계 등
- » (가스, 상하수도) 단수공고, 도시가스 공급정보, 하수처리 현황 등
- » (전기 · 통신) 정전공고, 전기 공급 및 이용현황, 통신사업자 현황 등
- » (교육 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등

－ 식품 ·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 관련 정보

- » (식품) 농산물 안정성 조사,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등
- » (보건 · 위생) 식품위생업소 단속 등 국민의 건강 관련 각종 행정처분 등
- »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 현황 등
- » (치안)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 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공개대상 정보

- » 분기별 계약발주 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 － (국가계약법)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1조 및 124조 제1항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 하천, 토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및 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 － 사업계획, 조사 결과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 －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 －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 입찰 시행에 관한 사항 등
 -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시행에 관한 사항
 -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 선정기준 등
- » 체결과정·결과 관련 정보 등
 -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 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 (국가재정법)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재정 사업의 평가 결과, 조세지출 예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 (지방재정법)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개요, 투자 심사 결과,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발행현황, 추진상황 등
- ※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1조의2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구분	공개범위/내용 (예시)	비고
중앙	• (범위) 장·차관, 소속기관장, 실·국장 • (내용) 직위, 사용 일시,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사용 금액, 사용 방법, 참석 대상 및 인원 등	
지자체	• (범위) 단체장(소속기관장 포함), 의원, 과장급 이상 • (내용) 직위, 사용 일시,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사용 금액, 사용 방법, 참석 대상 및 인원 등	
공공기관	• (범위) 기관장, 임원, 부서장 • (내용) 직위, 사용 일시,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사용 금액, 사용 방법, 참석 대상 및 인원 등	

※ 그 밖의 해외 출장경비, 지방의회예산,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내용 등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작성·공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공개 가능

–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 융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 »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의 건수, 위반단속 건수 등 행정 활동의 실적
- »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등
- »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 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라.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
 - '05. 7. 30. 이후 '주요 문서목록'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으로 범위 확대 (시행일 '05. 7. 30.)
 - '05. 7. 30. 이후 생산 정보부터 '정보목록'으로 작성, 이전 생산문서는 기존의 '주요 문서목록' 형태로 작성·비치

마.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법 제8조의2)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 모든 공공영역의 공개 가능한 결재문서를 실시간 제공
-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방안 추진
 - 공개 가능한 문서는 비공개 지정을 억제하고 적극 공개
 - 비공개 사유의 엄격 운영
 - ※ K-에듀파인에서 '의사결정 과정(5호)'에 따른 비공개 기간 합리적으로 설정
 - 정기적인 문서 재분류 작업을 통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 문서로 전환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문서 이관 전 공개 여부 재분류

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법 제9조 제3항)

- ㉠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

㉔ 작성 단위

- 직제에 명시된 실(국)·과·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 ※ 최소단위가 실·국으로 명시되어도 실과 단위로 세분한 소관 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㉕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최신판례의 인용,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 신속·재분류
- 직제규정 등으로 소관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보완·공개

사. 정보공개 청구내용의 확인 및 안내

㉖ 불필요한 청구방지 및 이의신청 사전예방 노력

- 정보공개 접수 담당 공무원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사전공표 및 정보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㉗ 청구정보의 특정 범위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공개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함(대법원 2007두2555, 서울 행정법원 2006구합20716)

㉘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있음(대법원 2010두14800)
-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대법원 2003두12707판결)

아.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 ㉚ 공개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비공개로 인한 국민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 정도를 비교하여 공공기관이 결정

자.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운영

㉮ 기관별 정보공개 책임관 운영(영 제11조의2)

- 정보공개 업무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 교육청은 실·국장급에서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운영
 - ※ 본청 : 행정국장
 - ※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 기관장이 지정(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
- 정보공개업무를 해당 기관 주관하에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정보공개 책임관의 역할 및 기능

- »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 정보공개 처리 절차 준수 및 사전정보공개 이행실태 확인·점검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지원
 - 공개 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지원
- »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 소속 담당 공무원 지도·교육 등을 주관하여 실시
- »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 기관별 규모·특성 등을 고려,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V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1 개요

- 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 수 : 위원장 포함 5~7인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위촉
- ⑤ 위원장: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 ⑤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외부전문가 위촉 때 배제 대상(예시)

-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2 대상기관

- ⑤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
- ⑤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 ※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3 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의 심의 예외대상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이란 청구 취지와 내용이 명백한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심의회 결과가 동일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말함

-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 아닌 타 법령을 의미하며,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대법원 2001추9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상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임.

(서울행법 2002구합33943)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는 결정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21조 제2항)

정보공개 길라잡이

WWW.OPEN.GO.KR

제2장

공공정보의 사전제공



I 원문정보 및 정보목록

1 원문정보 공개

가. 근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나. 개념

- ㉠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공문서 중 공개 또는 부분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다. 대상기관(시행령 제5조의2)

-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라. 공개 여부 설정

- ㉠ 문서기안시 공개 여부 결정

대국민 공개 여부	• 공개 : 국민들에게 결재문서 그대로 공개 • 부분공개 : 국민들에게 일부분 제외하고 공개 • 비공개 :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직원 열람 범위	• 기관 : 생산문서를 기관 전체 직원이 열람 • 부서 : 생산문서를 부서 직원에 한하여 열람 ※ 학교는 기관과 부서 동일
직원 열람 제한	• 결재 중 : 결재하는 동안 결재라인 원문 열람 • 제한종료일 : 설정기간 동안 결재라인 원문 열람 • 영구 :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에 한하여 원문 열람
기타보안	• 열람 때 암호 확인 : 부서 사람은 인증서 로그인 원문 열람

㉔ 공개 여부 구분 변경

- 공개 여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K-에듀파인 문서등록대장 >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 가능
- 변경사항은 다음날 정보공개시스템에 자동 반영

- ㉕ 공개로 생산된 문서는 사전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기안문과 첨부파일까지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되므로 문서 기안 시 문서 제목, 기안문, 첨부파일에 개인정보(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인정보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비공개(부분공개-개인정보 포함 파일은 비공개 선택) 문서로 분류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

 참고사항

- » 비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 제1호~제8호 : ①법령상 비밀·비공개 ②국방 등 국익침해 ③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④재판 관련 정보 등 ⑤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 ⑥개인 사생활 침해
 ⑦영업상 비밀 침해 ⑧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정보
- » 개인정보(예시)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카드 및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호봉, 경력 등
- ※ 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마. 원문공개 대상 문서

- ㉖ 기관별 아래 해당 직급/직위에 있는 자가 결재한 문서

기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결재자 직급/직위	3급 상당 7개 직위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미래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기관장	교육장	교(원)장

바. 공개율 인정 범위

대국민공개여부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목록공개 여부 (공개/비공개)	전자비전자 여부 (전자/비전자)	비전자일 경우 첨부물 유무(Y/N)	인정 여부
공개 부분공개	공개	전자	-	인정
		비전자	Y	인정
		비전자	N	미인정

※ 미인정 : 첨부물 반드시 등록하여 원문정보 공개문서로 인정되도록 조치

※ 이외의 대국민 비공개이면 전자문서, 비전자 문서 상관없이 모두 원문정보 공개율에서 미인정

사.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 ㉠ 공개 가능한 문서는 비공개 지정을 지양하고 적극 공개
- ㉠ 비공개 사유의 엄격 운영

※ K-에듀파인에서 비공개 사유 '의사결정 과정(5호)'에 따른 공개 제한 기간 과도한 적용 지양
예시) 공개 제한 기간 과도한 적용: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비공개로 공개 제한 기간을 30년을 둠

문서정보	
* 제목	2020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 기본계획(안) ☐ 긴급
* 과제카드	단위 [정보공개관리] 정보공개시스템운영 Q A
관련정보	Q A
문서요지	
* 대국민공개여부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목록공개
* 공개제한근거	관계법령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공개제한기간 2050-12-31 A
공개제한사유	

- ㉠ 정기적인 문서 재분류 작업을 통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 문서로 전환
- ㉠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공개 권고

2 정보목록

가. 목적

- ㉠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정보목록 작성·비치 등(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작성대상

-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타기관 접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목록에는 문서 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 기간 등 포함

단위업무	문서제목	생산일자	문서번호	부서명	담당자명	보존기간	공개여부
정보공개 제도 운영	정보공개 제도 운영계획	2019.1.30.	총무과-3	총무과	도경남	5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문서 시스템 등을 통해 생산문서 제목으로 공개(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 포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문서 제목으로 목록 작성·비치를 갈음

〈K-에듀파인에서 정보목록〉

결재정보		본문		□공통기안		안(案)추가	
I 문서정보							
* 제목	문서제목(문서제목 = 정보목록으로 정보목록 공개시 문서제목만 공개됨)					X □긴급	
* 과제카드						Q □	
관련정보						Q □	
문서요지							
* 대국민공개여부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목록공개						
* 공개제한근거	관계법령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공개제한사유							
* 열람범위	☐ 기관 ☒ 부서						
* 열람제한기간	☒ 설정안함 ☐ 결재완료일까지 ☐ 지정날짜까지 ☐ 영구						
기타보안	☐ 열람시암호확인 ☒ 문서암호화(DRM)						

다. 제외 대상

- ㉠ 목록 중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 ※ 정보 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도 목록(문서 제목)을 작성 · 공개하여야 하나 목록(문서 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때는 제외(비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유형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홍길동의 비위 사실 통보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 정보 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도 목록을 작성 · 공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때는 제외

» 예시) 잘못된 목록 비공개

- 학교 정화구역 특별점검 결과 보고
- 을지연습 시행계획
- 보안 점검 일제 정비계획
 - 목록(제목) 자체가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가 아님에도 비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임

라. 공개 방법

- ㉠ 민원실 등에 작성 · 비치
-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
- ㉢ 정보공개 포털과 연계하여 게시
 - ※ 본청 정보목록 게시 : 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목록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목록〉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Ō OFFICE OF EDUCATION

통합검색

전자민원마당

참여마당

알림마당

정보공개

교육청안내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방법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안내
- 정보공개담당자
-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서식
-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자료실
- 정보공개목록
- 이달의 주요 공개정보

정보공개목록

[f](#)
[d4m](#)
[blog](#)
[rss](#)

[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목록](#) > 2015년 이후

2015년 이후

2015년 이전

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기관)명			기관찾기
기간설정	1주일 1개월 3개월 2020.01.11 ~ 2020.01.18		
정렬순서	날짜		
제목검색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목록 검색〉

정보공개목록

[f](#)
[d4m](#)
[blog](#)
[rss](#)

[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목록](#) > 2015년 이후

2015년 이후

2015년 이전

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기관)명	행정국		기관찾기
기간설정	1주일 1개월 3개월 2019.12.18 ~ 2020.01.18		
정렬순서	날짜		
제목검색			

검색

전체보기

총 3,003건 · 페이지 : 1 / 301

제목	담당자	등록일
2019년 11월 민원 처리 현황	총무과	2020.01.09
2020.1.1자 조직개편에 따른 적정규모학교추진단 사무인계인수서	적정규모학교추진단	2020.01.02
2020.1.1자 조직개편에 따른 학생배치담당 사무인계인수서	적정규모학교추진단	2020.01.02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제출	적정규모학교추진단	2019.12.31
2019년도 사이버감사 결과 제도개선사항 검토의견 제출	노사협력과	2019.12.31
감사 자료 제출	총무과	2019.12.31
2020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소양평가 세부시행 계획(안)	노사협력과	2019.12.31
사무행정원(결산업무지원 및 계약업무지원) 단기근로자 채용 계획	재정복지과	2019.12.31

26 경상남도교육청

II 사전정보공표목록

1 공표기관

-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은 공표 대상 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2 공표 방법

- ㉮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3 처리 절차

- ㉮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처리 부서에서 등록

4 행정정보(사전정보) 공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 제3호가 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 도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에 관한 정보 - 학교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의 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경남교육통계와 각종 통계자료 등의 정보 - 수업료·입학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도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⑤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정보 등
- 식품 ·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 관련 정보
- 교육 · 의료 · 교통 · 조세 · 건축 · 상하수도 · 전기 ·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⑥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공개 대상정보)

- » 분기별 계약발주 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국가계약법)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 체결 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명, 계약 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⑤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 토목공사 및 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 사업계획, 조사 결과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 취득에 관한 정보
 - 공사 등에 관한 경비 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⑤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 ·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사항 등
 - (국가재정법)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조세지출 예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 (지방재정법)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개요, 투자심사 결과, 지방채 발행 심사 결과, 발행현황, 추진상황 등
- ※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2

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 직위,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 목적, 참석대상 및 인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 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⑤ 용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용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 ㉔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㉕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의 건수, 위반단속 건수 등 행정 활동의 실적
- 정보공개 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등
-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 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5 공표정보 선정 때 유의사항

- ㉔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
 - ㉕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6 사전정보공표 주기 및 시기

공표 주기	공표 시기
매일	매일
매주	월, 화, 수, 목, 금 중 선택
매월	1~31일 중 해당 일자 기재
분기	(예시) 1월, 4월, 7월, 10월(분기별 공표 시기에 해당하는 월 기재)
반기	(예시) 1월, 7월(반기별 공표 시기에 해당하는 월 기재)
매년	1~12월 중 해당하는 달 기재
격년	(예시) 19, 7월(공표 시기에 해당하는 년과 월 기재)
수시	(예시) 자료 발생 후 10일 이내

- ㉔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 ㉔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 ㉔ 가능한 생산 주기·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나,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 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정함
- ※ 공표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하여야 함

7 정보공개 포털 공표정보 탑재 방법

- ⑤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정보공개접수자
- ⑤ 메 뉴 : 사전정보관리 > 사전정보관리 > 등록
- ⑤ 사전정보관리 화면

① 사전정보관리

기관유형: 중앙
기관명: 행정안전부
사전정보제목: 정보공개정책과
분류체계: 1LEVEL, 2LEVEL, 3LEVEL
부서명: 정보공개정책과
상태코드: 전체
조회

■ 정상 상태코드 : 2xx(성공), 0(체크대기)
■ 오류 상태코드 : 3xx(URL 오류), 4xx(페이지 없음), 5xx(서버오류), -1, -2(서버검증시 실패)
■ 오류 상태코드의 경우 등록하신 URL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다운로드 | 엑셀 다운로드 | 엑셀 일괄업데이트

전체건수 1건

번호	기관/부서명	사전정보제목	사기	주기	방법	등록일자	상태코드	체크일자
1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정부혁신기획관>정보공개정책과	사전정보공표 운영 가이드	변경시	수시	홈페이지	2015-02-10	200	2018-03-03

1 등록 삭제

〈화면 1 – 사전정보목록〉

② 사전정보관리 | 등록

기관유형: 중앙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정보공개정책과
분류체계: 1LEVEL, 2LEVEL, 3LEVEL
사전정보제목: 정보공개정책과
세부항목: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위치 (URL): 정보공개정책과
사기: 매월
주기: 링크
방법: 링크

등록/수정된 정보는 하루가 지난 후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에 반영됩니다.

저장 목록

〈화면 2 – 사전정보등록〉

⑤ 처리 절차(신규등록)

- 사전정보관리 화면(화면 1)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
- 사전정보 등록화면(화면 2)에서 사전정보 제목, 정보 위치(URL) 등의 필수항목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으로 등록 완료
- 이미 등록된 사전정보 변경 시 사전정보관리 화면(화면 1)에서 해당 정보목록을 클릭하여 수정 및 삭제

⑤ 사전정보공표목록 등록 때 유의사항

- BRM 의 분류체계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더라도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
- 정보 수요자가 정보공개 포털에서 해당 정보를 클릭할 경우 정보가 보일 수 있도록 최하위 웹페이지 URL 기재 (재검색하지 않도록 등록)
- 정보등록 후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하여 등록한 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III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 공개(법 제9조 제3항)

공공기관은 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작성 단위

- ㉠ 직제에 명시된 실(국) · 과 · 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 ※ 최소단위가 실 · 국으로 명시되어도 실과 단위로 세분한 소관 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 ㉡ 기능이 같은 3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서 작성 가능
 - 예) 우체국, 각급 학교 등

3 작성 방법

가. 실(국) · 과 · 팀별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 ㉠ 작성 단위별로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 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나. 기관 단위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 세부기준 작성

- ㉠ 기관 담당자는 작성 단위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 세부기준 작성
 - ※ 필요한 경우 기관별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나 TF팀 구성 · 운영

다.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 ㉡ 작성 단위별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할 경우 작성한 실(국) · 과 · 팀과 조정

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세부기준(안) 확정

- ㉠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해 최종적인 검증 · 확정

4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⑤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 관보 · 공보 ·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⑤ 최신판례의 인용,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 신속 · 재분류
- ⑤ 직제규정 등으로 소관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보완 · 공개

가.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 대법원 규칙 · 헌법재판소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⑤ 입법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및 '비밀'의 의미

» 다른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 호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란 함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거나 적어도 비밀 또는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률 규정을 의미함.

(서울행법 2015구합66806)

» 비밀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 되어야 함.

⑤ '1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

- 해당 정보가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해져 있어야 함
 -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 '비 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 '법률에 따른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 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이래 제정된 법규명령 (위임명령)을 의미함. (대법원 2003두8395)

-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 해당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비공개 여부 판단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 범위가 구체적인지, 포괄적인지 여부

㉢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 조항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의3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발명진흥법 제19조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개인 위치 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32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에이즈 검사 결과 회보, 에이즈 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지원 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 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 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국가 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투명성, 국가적 의혹 해소 그리고 개별 국민의 권익 보장과 같이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 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외교 · 안보 · 국방 · 통일에 대한 위협 요소 등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정보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 투명성, 국가적 의혹 해소, 국민의 권익 보호 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
-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 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법 2002구합33943)

㉢ 비공개 유형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을지연습	을지연습 관련 문서(기본계획, 자체 사건 계획, 사건 메시지, 처리 결과, 보고서 등)
총무 계획	총무 계획 관련 문서(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 등)
직장민방위대 운영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민방위 교육 관련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과 실시 결과
직장예비군 운영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정보 예비군 교육 관련 문서
보안업무	암호 자재 현황,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취급 인가 관련 정보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보안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사항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세부 현황자료(시스템 정보, 망 구성도, IP주소 현황자료 등) 정보화 사업 산출물(ERD,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 점검 관련 자료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자료
관련 기관 협조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가안보	기타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

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 (서울행법 2008구합31987)

㉢ 비공개 유형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설명
고발자나 고발자 가족 등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개로 인해 그 고발자나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청사 방호 관련 정보	청사설계도, 전자 경비 시스템 설치 도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경비일지, 순찰일지, 순찰 경로 등 경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방재, 방법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법 행정, 방재 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인감, 주민등록	인감 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 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서울행법 2004. 2. 3., 2002구합24499)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 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12. 4. 12., 2010두24913)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11. 11. 24., 2009두190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 원칙, 비공개대상 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해당됨(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대법원 2003. 12. 26.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서울행법 2002구합24499)

- 수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가능(대법원 2010두7048)

㉡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설명
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 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 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 예방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공개할 경우 청사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 곤란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수사 사건의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형의 집행·교정	수형자의 신분 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마.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 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대법원 2001두 8827)

- ※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공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 비공개 여부 판단기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비공개
 -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대법원 2013두20301)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인지 여부
 - ※ 한시적 비공개 사유로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때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종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별지 제1호 서식)
- ‘시험’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그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시험업무와 관련된 정보 중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기밀성 등을 필요로 하는 대인적·주관적 평가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비공개 처리
 -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대법원 2000두 6114)

㉢ 비공개 유형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설명
감사	불시 감사계획 ※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공표 또는 공개(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시험	문제은행 방식 시험문제지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의 채점결과표, 채점 기준, 합격 기준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설명
인허가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입찰	입찰 종료 이전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첨부 서류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 종료 이전 예정 가격 조서, 계약 내용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공개될 경우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교섭 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기술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리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등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	원칙 : 공개, 단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또한 위원회 등에서 규정 또는 결의가 있을 때 한하여 비공개
	법률개정안 및 검토 의견 등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공무원단체, 노동조합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위한 문서로 비공개 가능

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입법 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대법원 2014.7.24. 2012다49933)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고유 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주민등록법 제7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

㉔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 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써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음

⑤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설명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개인용), 개인 이메일 주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 침해 우려 및 상업목적으로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가족관계	개인이나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
	퇴출 후보자 명단, 면직자 명단, 징계내용, 범죄사실 기록,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개인의 명예 등 침해할 우려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민감한 개인정보, 공개 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 인사교류 신청, 채용 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 신원 조사, 인사기록 카드, 근무성적, 연가·병가 사유, 퇴직 사실 확인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납세명세,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명세, 복지포인트 및 사용 명세,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일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가족관계	개인이나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범죄사실 기록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
	납세 및 소득 명세, 재산 및 채무 현황, 도시계획 및 관련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보조금 수령 여부 및 지원비용 ※ 통계자료는 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피진정인을 조사한 내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㉔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공개 대상정보	설명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법 제19조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수상자 명단 등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입증서류구비 확인서류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

㉕ 기타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타정보 공개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 관명, 조약·협정의 조인 자명, 회계 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됨.
- 허위의 개인정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허위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공개되어야 함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정부 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 정보 공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사.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입법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 판단기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모든 비밀 사항을 말함(대법원 2009두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 2012-24651, 대법원 2007두1798)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 특성, 영업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중앙행정심판위 2012-24651)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정부법무공단 2012-440, 2012.3.19.)

㉢ 비공개 유형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설명
정당한 이익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정보,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기술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로 인하여 경영·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정보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설명
영업상 비밀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 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부표별 분담 하중의 산출 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리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모든 비밀 사항

아.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 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지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

- ※ 결정통지에서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비공개 유형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설명
부동산 투기 및 매점매석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학교시설 결정, 신설 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 승인 전·후 관련 정보, 학교 용지 선정을 위한 정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때 정보 획득의 여부에 따라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 초래하는 정보

IV 학교형 표준안

1 사전정보공표목록

가. 학교 사전정보공표목록 작성 방법

- » 공표목록 공통(안)은 주요 권고안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추가·삭제 가능
- » 공표항목은 공표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 공통(안)에 명시된 공표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공개 주기 및 공개 시기는 수시/변경 시 등의 표현을 되도록 자제하고, 월 1회/매월 1일 등 정확한 공개 시기로 표기
- » 공개 위치는 공표항목의 자료가 홈페이지 어디에 탑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 ※ 공개 위치를 링크화하여 클릭 때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 가능한 학교는 해당 게시판과 공개 위치 링크 연결

나. 각급 학교 공통(안)

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위치	담당 부서
1	주요학사일정	• 연간/학기별/월별 주요 학사 일정	월 1회	매월 1일	ex) 학교 홈페이지 /학교 소개 /주요 학사 일정	00부
2	학교 현황	• 학생, 교직원현황, 시설물 현황 등	연 1회	3월		“
3	학교연혁	• 개교, 교명 변경 등 학교 연혁	연 1회	3월		“
4	교육목표	• 교육목표, 교육방침, 교육 비전 등	연 1회	3월		“
5	특색교육	• 1교 1특색 교육활동	연 1회	3월		“
6	학교 규칙	• 학칙, 생활 규정, 학생선도 규정 등 학생 생활 관련 지침	연 1회	3월		“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	연 1회	3월		“
		• 출결관리 규정	연 1회	3월		“
		• 장학생 선발 규정	연 1회	3월		“
		• 전(편)입학 처리 규정	연 1회	3월		“
		• 학생자치 규정	연 1회	3월		“
7	전(편)입학 처리	• 전(편)입학 처리 절차, 구비서류, 처리기관 등 안내 • 재배정 관련 안내	연 1회	3월	- 초·중 : 00교육지원청/ 전입학 안내 - 고 : 경상남도교육청/ 전입학 안내	“

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위치	담당 부서
8	학교 소식	• 각종 교내외 행사 안내	월 1회	매월 5일 이내		“
		• 행사 사진 등	수시	행사 완료 후 5일 이내		“
9	가정통신문	• 가정통신문	수시	결재후 익일		“
10	일과 운영 및 학년별 시간표	• 일과 운영표, 학년별 시간표	연 2회	3월, 9월		“
11	통학버스 운행 안내	• 통학버스 노선 및 시간 안내	연 1회	3월		“
12	학교교육과정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 교육과정 편성표, 교과운영 기본방향, 교과진도 운영 등	연 1회	3월		“
13	교원 능력 개발평가	• 전년도 통계(결과)	연 1회	11월 말		“
14	교과 활동	• 외국어 교과 활동 – 외국어교육 운영계획, 활동사진 등	연 1회	3월		“
		• 00교과(국어, 수학, 과학, 체육 등) 활동 – 00 교육 운영계획, 활동사진 등	연 1회	3월		“
15	교과서	• 검 · 인정 교과서 선정목록	연 1회	2월		“
16	학교 도서관	• 도서관(도서관) 운영계획	연 1회	3월		“
		• 독서 행사(독서캠프 등) 계획 및 안내	연 1회	3월		“
		• 도서관구입(예정) 목록	연 1회	3월		“
17	기초학력 향상	•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계획	연 1회	4월		“
18	영재교육	• 비전과 목표, 운영 근거 및 방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세부추진계획	연 1회	3월		“
19	공개수업	• 실시 일시, 실시내용, 기본계획 등	연 1회	3월		“
20	학생 평가	• 학업성적 관리규정	학기별	4월, 9월		“
		• 교과별 평가 계획 – 시기, 횟수, 반영 비율, 평가요소 등	연 1회	3월		“
21	현장학습	• 기본계획 (장소 · 일시 · 학부모부담금 등)	연 1회	4월		“
		• 경비 집행 및 정산	연 1회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 학교 홈페이지/학교 회계 현황	“
		•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평가 및 결과 – 운영위 심의 결과, 계약 및 사전답사 결과, 1인당 경비, 만족도	연 1회	종료 후 20일 이내	– 경상남도교육청/맞춤형 서비스, 학생 학부모/현장 체험/현장 체험 공개 방	“

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위치	담당 부서
22	수련활동	• 기본계획 (장소·일시·학부모부담금 등)	연 1회	4월		“
		• 경비 집행 및 정산	연 1회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 학교 홈페이지/학교 회계 현황	“
		• 평가 및 결과 – 운영위 심의 결과, 계약 및 사전답사 결과, 1인당 경비, 만족도	연 1회	종료 후 20일 이내	– 경상남도교육청/ 맞춤형 서비스, 학생 학부모/현장 체험/ 현장 체험 공개 방	“
23	수학여행	• 기본계획 (장소·일시·학부모부담금 등)	연 1회	4월		“
		• 경비 집행 및 정산	연 1회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 학교 홈페이지/학교 회계 현황	“
		• 평가 및 결과 – 운영위 심의 결과, 계약 및 사전답사 결과, 1인당 경비, 만족도	연 1회	종료 후 20일 이내	– 경상남도교육청/ 맞춤형 서비스, 학생 학부모/현장 체험/ 현장 체험 공개 방	“
24	자율활동	• 학생회 활동(학생자치 활동) –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구성, 운영계획 및 결과 등	연 1회	3월		“
		• 학예회(또는 00축제) – 실시 일시, 실시내용, 행사 사진 등	연 1회	행사 전후 10일 이내		“
		• 체육대회(또는 운동회) – 실시 일시, 실시내용, 행사 사진 등	연 1회	행사 전후 10일 이내		“
		• 경시대회 – 정보화 경진대회, 과학경진대회(과학의 달 행사, 수학 경시대회 등의 실시 일정, 실시내용, 행사 사진 등	연 1회	행사 전후 10일 이내		“
		• 각종 기타 행사 활동 – 실시 일시, 실시내용, 행사 사진 등	연 1회	행사 전후 10일 이내		“
25	봉사활동	• 기본계획, 청소년자원 봉사활동 기관안내, 확인서 양식 및 인정 시간 안내 등	연 1회	3월		“
26	동아리 활동	• 동아리 운영 – 연간 활동계획, 추진 결과, 실시 사진 등	연 1회	3월		“
		• 청소년단체 운영 – 청소년단체 연간 활동계획, 추진 결과, 실시 사진 등	연 1회	3월		“
		• 스포츠클럽 운영 – 운영계획, 일정, 사진 등	연 1회	3월		“
27	방과후학교	• 방과 후 특기·적성 운영계획 – 방과 후 프로그램 안내, 토요 방과 후 운영 안내 등	연 1회	4월		“

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위치	담당 부서
28	학교인성교육	• 기본계획	연 1회	3월		“
29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 기본계획	연 1회	3월		“
30	성폭력 예방 및 대책	• 성 가치관 함양 및 성 의식 개선 교육 시행, 성범죄 피해 예방 정책, 기본계획	연 1회	3월		“
31	정보통신 윤리교육	• 기본방향 및 계획	연 1회	3월		“
32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관리방침	• CCTV 설치 근거 및 목적,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등 CCTV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상시	상시	– 기관(학교) 홈페이지	“
33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 안전한 교육 활동이 운영, 시설 안전점검, 안전 사고피해 예방 대책 등	연 1회	3월		“
34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	• 기본계획	연 1회	3월		“
35	학교안전공제회	• 처리 규정, 절차안내	연 1회	3월		“
36	진로 교육	• 진로 교육계획 – 진로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 상담, 진로체험, 진로 정보 제공 등	연 1회	4월		“
37	Wee 클래스	• 기본계획	연 1회	4월		“
38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 학교보건 운영관리 내실화, 학생건강 증진 활동 활성화, 감염병 및 응급 상황 관리 강화	연 1회	3월		“
39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사업	• 기본계획 – 업무처리 절차안내, 상담 연계	연 1회	4월		“
40	학교 보건교육	•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계획	연 1회	4월		“
		• 흡연 예방 교육	연 1회	4월		“
		•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연 1회	4월		“
41	미세먼지	• 미세먼지 대응 기본 대책 및 대응 매뉴얼	연 1회	4월		“
42	먹는물 관리	• 위생관리 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	연 1회	4월		“
43	체격 및 체력검사 (PAPS)	• 체격 및 체력검사 계획 및 일정	연 1회	4월		“
44	교육 급여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 안내	연 1회	4월	– 00교육지원청/알림·참여/교육복지사업/교육 급여 사업(복지로)	“

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위치	담당 부서
45	교육비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 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급식비 지원 –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 저소득층 자녀정보화지원 – 다자녀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내용 등	연 1회	1월	– 경상남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자료실	“
46	학교급식 식단	• 식단표, 식단사진 – 식단표에 영양량,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원산지 표시	상시	상시		“
47	학교급식 음식재료 공급업체 계약현황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계약현황	월 1회	10일		“
48	학기별 급식비 사용 비율	•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무상급식 식품비 포함) 중 식품비 비율	학기별	2월, 8월		“
49	급식의견수렴	• 급식의견수렴 및 개선조치 내용	상시	상시		“
50	기타 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운영계획	연 1회	3월		“
		• 학교급식 및 현품 설명서	월 1회	5일		“
		• 급식 모니터링 운영 결과	수시	수시		“
		• 급식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상황	연 1회	3월		“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연 1회	8월		“
		• 축산물(한우, 돼지, 오리, 닭고기) 이력번호 게시	수시	수시		“
		• 식재료 안전성 검사(잔류농약 검사 결과), 쇠고기 유전자 및 식기구 미생물 검사 등	수시	수시		“
51	학교 예·결산 현황	• 본예산, 추경예산서, 결산서	수시	확정 후 10일 이내	– 학교 홈페이지/학교 회계 현황	“
52	학부모회	• 학교 예산 편성 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수시	12월 중순		“
		• 학부모회 구성 기본계획 등	연 1회	3월		
53	학교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규정	수시	개정시	– 학교 홈페이지/학교 운영위원회	“
		• 소집공고	수시	개최 7일 전		“
		• 회의록 및 회의 결과	수시	심의 후 즉시		“
		• 구성현황	연 1회	구성 후 즉시		

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위치	담당 부서
54	학교발전기금 운용	• 운용계획서	사안 발생시	심의 의결 후 1개월 이내	- 학교 홈페이지/학교 회계 현황	“
		• 접수 및 집행내역	연 4회	분기별 1개월 이내	- 학교 홈페이지/학교 회계 현황	“
		• 결산서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학교 홈페이지/학교 회계 현황	“
55	수익계약체결 현황	• 계약 방법, 내용, 금액 등	수시	수시	- 경상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 체결 현황	“
56	업무추진비	• 월별 사업성 업무추진비 집행명세	매월	10일	- 학교 홈페이지/학교 회계 현황	“
57	학교 회계 카드 사용명세	• 법인카드 사용명세 •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명세	매월	10일	- 학교 홈페이지/학교 회계 현황	“
58	기관장 출장내역	• 월별 기관장 관외 출장목적, 출장 기간 (시간), 출장지	월 1회	5일		“
59	학교시설개방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종류, 이용수칙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	연 1회	5월		“
60	학부모부담경비 정산명세	• 수익자부담경비(교복비, 졸업앨범비 등) 정산명세,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 /결산명세	수시	정산일로 부터 10일 이내		“
61	상품권구매공개	• 월별 상품권구매 명세, 구매용도, 구매 수량, 총 구매액 등	월 1회	5일		“
62	입찰공고	• 공사, 물품구매, 용역 입찰공고, 소액 수의 전자 견적 제출 공고	수시	공고일		“
63	정보공개 제도	•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담당자 안내 등	연 2회	1월, 7월		“
		• 사전정보공표목록	연 1회	3월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연 1회	3월		“
64	행정서비스 현장	•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연 1회	3월		“
65	민원업무 안내	•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 기간, 구비서류,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	연 1회	3월		“

다. 사전정보공표 목록 작성 때 참고자료

순	공표목록	관련 법, 조례, 지침 등
1	학교 규칙	•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 규칙)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등)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 활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2	학교 교육 과정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 교육기본법 제26조의 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 등) • 경상남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침 • 경상남도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침 •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침
3	교원 능력 개발평가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4	교과서	•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
5	기초학력 향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경상남도교육청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 기초학력 지원(향상) 계획
6	영재교육	•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의 수립)
7	공개수업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장학지도)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 장학활동 기본계획
8	학생 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9	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 경상남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10	자율활동	■ 학생회 활동(학생 자치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 활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 학생 자치활동 내실화(경남교육, 2-2-2)
11	봉사활동	•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12	동아리 활동	■ 청소년단체 운영 • 청소년기본법 제47조 및 제48조, • 청소년단체 활동 실무지침

순	공표목록	관련 법, 조례, 지침 등
13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경남교육)(연간운영계획 공개) • 2020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유치원)
14	학교인성교육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15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5조
16	성폭력 예방 및 대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7	정보통신 윤리교육	•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기본계획
18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관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
19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20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	•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기본계획
21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2	진로 교육	• 진로 교육법 제11조 • 경상남도교육청 진로 교육 진흥 조례 제6조
23	Wee 클래스	• 경남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 • Wee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
24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 학교보건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 · 시행)
25	학생 정서 · 행동 특성검사 사업	• 학생 정서 · 행동 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26	미세먼지	• 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 설비 등 설치) • 학교보건법 제5조(대기오염 대응 설명서의 작성 등)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27	먹는 물 관리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환경관리 분야)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28	학교급식 식단/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계약현황/ 학기별 급식비 사용 비율	• 학교급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정보공개 대상) • 학교급식 기본계획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9	급식의견수렴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 학교급식 기본계획
30	기타 급식에 관한 사항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 학교급식 기본계획, 가족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24조(소위원회 등 설치)
31	학교 예·결산 현황/학생 학부모 예산참여 의견 수렴	• 경상남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52조 •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순	공표목록	관련 법, 조례, 지침 등
32	학교운영위원회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33	학교발전 기금 운용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 •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34	수익계약체결 현황	• 지방계약법 제9조, 제31조 •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35	사업성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36	학교 회계 카드 사용내역	•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
37	기관장 출장내역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38	학교시설개방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11조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일 이용에 관한 규칙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39	기타 학부모부담경비 정산명세	•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 •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40	상품권구매공개	•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상품권구매 및 사용 요령) •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41	정보공개 제도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42	행정서비스 헌장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43	민원업무 안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 방법

- » 공통(안)은 주요 권고안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공통(안)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추가·삭제 가능
- » 학교별 추가 기준 수립 시 국민이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작성

나. 각급 학교 공통(안)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호)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6호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조회	6호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교육급여·교육비 - 교육급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교과서, 교육정보화,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교 급식비, 체육복, 교복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	6호
	급여	연금·건강보험·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 서류, 채권 관계 서류,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6호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6호
	민원	제증명발급·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6호
	보안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5조, 제32조)	1호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비밀(대외비)문서발간 승인신청서	2호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 기관이나(학교)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당직명령부, 당직일지,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2호
		IP대장, 시스템 로그 파일,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망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2호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을지태극연습, 민방위,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	2호
	사립학교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6호
	상담	학생·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 (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 일반학생 상담)	6호
	시설	학교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3호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호)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불참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	5호, 6호
	연구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5호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6호
	영재교육	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5호, 6호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 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5호, 6호
	을지 태극연습	을지태극연습 참가 기관명, 참가자,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사건 메시지 (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 보고 관련 정보	2호
	인사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비상 연락망, 직원 주소록 등)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근무평정 자료	6호
		임용서류, 근무상황부, 인사기록 카드, 교직원명부, 전보내신 서류, 인사기록변경(등재)신청 서류, 호봉 재확정 서류, 징계처분 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6호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관련 요구자료	4호, 6호
	자율활동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6호
	재산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6호
	징계	징계위원회 명단, 회의록,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1호, 5호
	체격 및체력검사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6호
	학교안전 공제회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6호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6호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1호, 5호, 6호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호)
	학생 평가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결과 관련 자료), 석차 연명부	5호
		개인별 성적표	6호
	학생건강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6호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 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영양호아동 명단	6호
	학생시상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6호
	학적	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6호
		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학력 조회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공공기관) 등	6호
		수료·제적·졸업·명예 졸업 대장, 입·퇴학 처리부	6호
		재학생·졸업생·제적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6호
		전·입학원서, 학생 전입 전출 자료,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6호
		원아 이동 원부, 출석부	6호
	행정 정보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6호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6호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1호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4호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	6호, 7호
		자동이체(신용카드,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6호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6호
	회의록	각종 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 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 장학생 선발, 학생자치회,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 등	5호

정보공개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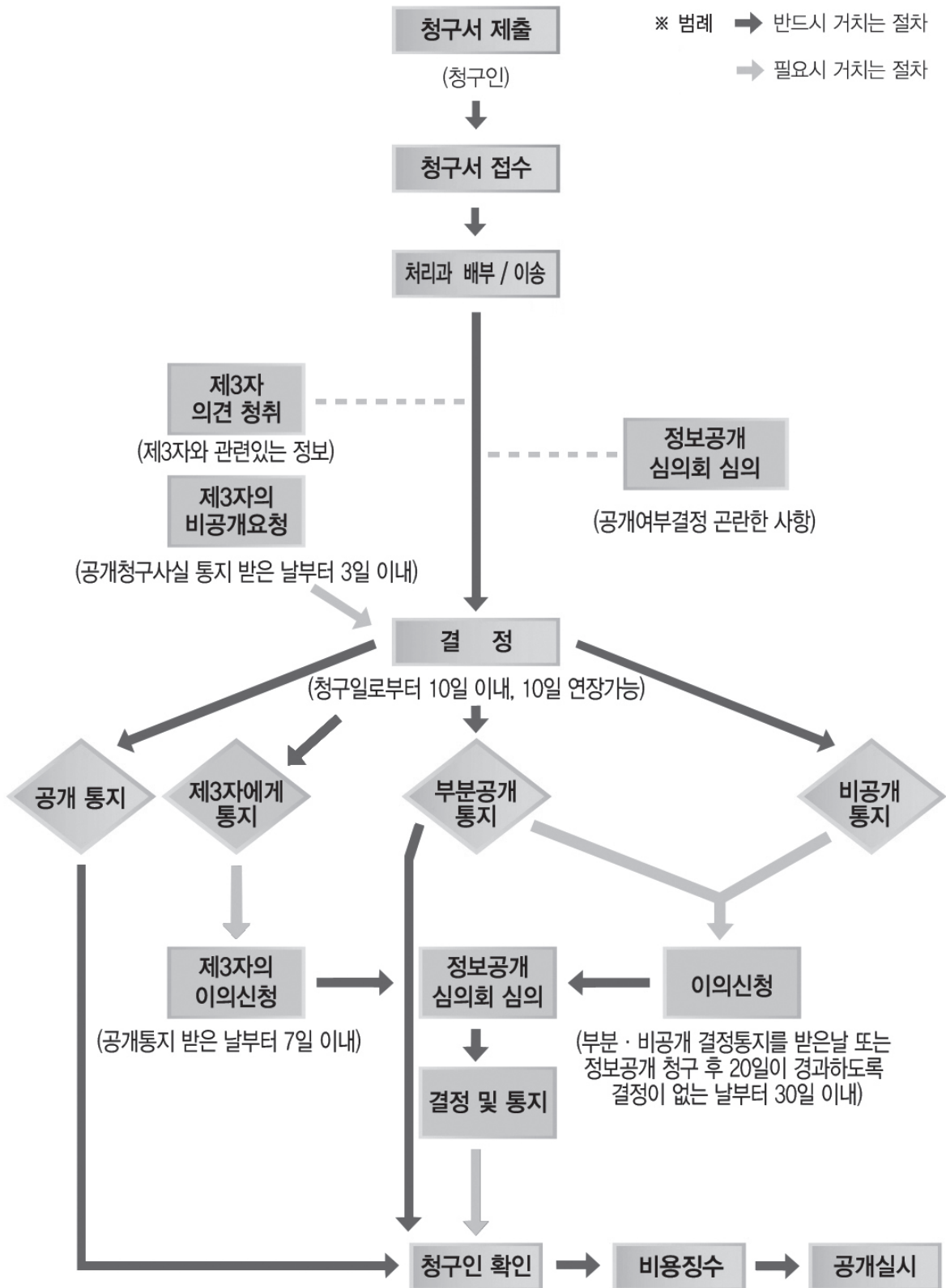
WWW.OPEN.GO.KR

제3장

정보공개 청구 처리하기



I 정보공개 처리 따라 하기



II 정보공개 결정 처리 방법

1 정보공개 청구권자

가. 모든 국민(법 제5조)

-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중증, 동창회 등)

나. 외국인(시행령 제3조)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예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가. 청구 대상기관

-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나. 청구 방법(시행령 제6조)

-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www.open.go.kr)
- ㉧ 구술청구 :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별지 제2호 서식)

다.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공개 방법, 수령 방법 등 (별지 제1호의2 서식)

3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가. 접수

- ㉩ 정보공개 접수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시행령 제6조)
- ㉪ 접수증 발급 생략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6조 제2항)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하여야함.

나. 이송(법 제11조 제4항)

- ㉡ 청구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경우 지체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
- ㉢ 이송한 후에는 정보 소관 기관, 이송 사유 및 일시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별지 제3호의2 서식)
-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

다.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처리(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 ㉢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진정·질의인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를 제공

라. 정보공개청구 보완·취하

- ㉡ 청구 서류의 보완·취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 해당 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있음
- ㉣ 접수한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미산입
 -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그 처리 기간에 미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 청구 서류의 취하는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
 - 직접 제출 및 우편·팩스를 통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
 - ※ 구두 신청에 의한 취하 처리 때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4 정보공개 처리

가. 정보공개 여부 결정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는 정보를 공개 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상 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 함께 검토
 - ※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 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 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함

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유형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다. 공개여부 결정기간(법 제11조 제1항)

- ㉔ 법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
 - ※ 경상남도교육청 자체 권장 기간: 7일
- ㉕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㉖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 신청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시행령 제7조)

-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의 경우

라. 결정 기간의 기산점

- ㉔ 직접 방문 청구할 때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㉕ 우편 또는 팩스 청구할 때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㉖ 인터넷 청구할 때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 근무시간 이후에 제출된 청구서는 다음 날 근무가 개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봄
- ㉗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산입하지 않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준용)

5 제3자 의견 청취

-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법 제11조 제3항)
 -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별지 제6호)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 제3자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나 구술로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명날인, 서명)을 받아야함
-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법 제21조)

가. 제3자의 범위

- ㉠ 정보공개 청구자와 이에 대한 공개결정 여부의 처분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인 (정보 생산기관 포함)을 말함
- ㉡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나.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 ㉠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 접수번호 · 일자,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등(별지 제4호의3 서식)
 -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
-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다. 필요한 경우 제3자 의견 청취

- ㉠ 법 제11조 제3항의 ‘필요한 경우’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함
- ㉡ 제3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 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 통지(별지 제11호의2 서식)
-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6 결정통지서 작성 및 통지

가. 정보공개 통지 기간(시행령 제12조 제1항)

-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30일 간격을 두어야 함.

나. 공개외 통지 방법

- ㉔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㉕ 부분(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개별 법령 조항 조문을 구체적 기재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
 - ※ 단순히 각 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㉖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7 정보공개 실시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개결정 통지서
 -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임의대리인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 가공 공개 가능)

»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가. 공개 결정

- 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㉕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경우는 제외
- ㉖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1) 공개 방법

-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 공개 가능
 - ※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허락하여 공개 방법 변경 가능(대법원 2003두8050)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URL)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2) 즉시 공개(법 제16조)

- 대상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처리 방법
 -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임의서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나.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 ⑤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
- ⑤ 수수료 산출
 - 경상남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에 따라 산출

전자파일 수수료 부과 예시

- ≫ 전자파일이 아닌 문서 · 도면 · 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경우 : 사본 수수료의 1/2
- ≫ 전자파일이 아닌 문서 · 도면 · 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하면서 동시에 지움 작업을 하는 경우 : 사본 수수료
- ≫ 전자파일을 전자파일로 단순 변환하는 경우(예, 캐드파일→PDF) : 무료
- ≫ 전자파일을 출력 후 지움 작업하고 다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경우(예, PDF를 출력하여 지움 작업 후 다시 전자파일로 전환) : 사본 수수료
- ≫ 전자파일 상태에서 지움 작업하고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경우(예, 엑셀 자료 일부를 지우고 엑셀 자료로 제공) : 무료

㉔ 수수료 감면(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제출받아야 함

- 감면 비율 :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
(시행령 제17조 제5항)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다. 청구인 확인(시행령 제15조)

㉔ 청구인 확인 시점: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은 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 시점에서부터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음

㉕ 본인확인 필요성 판단

- 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㉖ 본인확인 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 등록증 또는 기타 외국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 등록증 또는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라. 부분공개 결정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분리 가능성 판단기준 및 처리 방법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정하여야 함

㉢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비공개, 공개)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법 제14조)

-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으므로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부분공개 시 통지

-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마. 정보 부존재 처리

1) 처리기한

- 법정기간 : 청구일부터 7일
 - ※ 정보 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권장 기간 : 청구일부터 5일
- 다만, 공개·비공개 결정과 정보 부존재가 함께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정보 부존재'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2) 정보 부존재 유형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 기관의 비전자 기록물 및 전자기록물 중 청구받은 정보의 검색 가능 여부
- » 청구정보가 관련 법령(직제),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소관의 업무인지 여부
- »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접수되는 시기가 未도래 경우
- » 정보공개에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 등이 요구되는 경우

기관의 생산·접수 여부 판단 시 상당한 개연성 여부로 판단

- »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당해 기관이 보유 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의 존재 여부를 판단
 - ※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 제목, 번호, 작성 일자, 관련 사항 등을 제시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취합 여부의 판단기준

- » 기관 내(內)
 -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
 - ※ 부서별로 정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취합의 개념이 아님
 -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 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추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 취합·제공
 - ※ 단,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가능
- » 기관 외(外)
 -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제공할 의무는 없음
 - 단, 관련 규정 등에 타 기관 정보까지 취합·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 취합 아님

가공 여부의 판단기준

- » 비전자 형태→전자적 형태
 - 비전자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 비전자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에 해당
- » 전자적 형태→비전자 형태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 가능
 - ※ 엑셀로 관리되는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 가능
 - 전자적 정보를 비전자 정보로 변환 시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되면 가공에 해당
-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 정보의 추출은 가공에 해당 가능

※ ‘보존 연한이 경과’하여 폐기의 판단기준

보존 연한 경과

- »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 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 보존 연한 경과 여부는 청구 시점이 아닌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
 - ※ 보존 연한 내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보 부존재 처리
 - ※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폐기

- » 청구받은 정보가 실제 보유·관리 대상인지 아닌지
 - ※ 보존 연한이 경과하여도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정보 부존재로 판단 불가

※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 청구 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 청구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조직·프로그램 등에 걸쳐 있는 경우
-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유의사항

- ※ 민원처리법 제22조에 따라 보완 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민원처리법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부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정보 부존재 통지
- » 보완 요구는 접수 후 즉시 문서·말·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민원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3) 정보 부존재 처리 절차 유형

- 통일성 있고, 객관적으로 정보 부존재 판단·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담당 부서의 ‘협조’를 거쳐서 정보 부존재 처리
- 정보공개 시스템상 정보 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바. 진정·질의 처리(시행령 제6조 제3항)

-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
- ㉡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시스템상 통지로 같음
 - ※ 처리 기간 : 질의·상담·고충 민원 7일 이내, 법령해석 14일 이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의 종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 민원

- 1) 법정 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 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 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 민원 :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및 고충 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 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 민원

사.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오·남용에 대한 기준이 없고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의 빈도가 많거나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 오·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은 법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아니함.

※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정보공개 오·남용 판단기준

»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대법원 2014두9349)

» 국민의 알 권리 또한 모든 법체계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 위에서 보장될 수 없음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2018-13)

- ※ 청구한 정보 모두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양이 워낙 방대하여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 사건 관련 청구는 우리 모든 법체계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 ※ 다만, 1명이 매일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1명이 많은 기관에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하루에 여러 건의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한 건의 청구에 많은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정만으로 오·남용으로 볼 수는 없음. 즉, 단순히 양을 기준으로 오·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동일 ·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시행령 제6조 제5항)

» 동일 ·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시행령 제6조 제5항)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음

1.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민원처리 결과 등을 통지했음에도 다시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동일 정보〉

-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여 다시 공개하여도 내용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청구
 - ※ 동일의 기준은 종전의 공개 내용과 유사성 및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종결처리 하지 않고 공개 사항은 공개 처리해야 함
 - ※ 새로 추가된 사항이더라도 기존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봄

〈반복청구〉

- 정보공개 결정을 받은 자가 동일 내용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한 경우
 - ※ 동일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지 않은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청구에 해당 안됨
 - ※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질의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보 부존재 또는 민원 답변 처리 후 동일 내용을 계속 청구하는 경우 반복청구로 봄
 - ※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청구가 아님
 - ※ 동일 내용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동일 청구로 종결처리 할 수 없고 각각 해당 기관의 정보에 대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함
- 동일 내용을 여러 사람이 하나의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청구가 아님

〈정당한 사유 기준〉

-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라 판단
 -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
 -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것에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 등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경우 등
- 처리 절차(시행령 제6조 제5항)
 - 내부 결재 후 종결처리
 - ※ 청구인의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 통보(오프라인),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8 불복구제 방법

가.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1) 이의신청 제기권자

-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 제3자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2) 이의신청 신청 기간

- 청구인 : 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수신자에게 도달,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에 따름

3) 이의신청 신청처 : 정보공개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4) 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별지 제9호 서식)
 -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5) 처리 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결정 기간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10호 서식)
 -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연장 사유, 연장 결정 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6)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 제18조 제2항)

- »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 단순·반복적인 청구
-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심의회 심의를 제외하는 경우(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 »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7) 이의신청 결정의 종류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 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 인용, 인용으로 구분

인 용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부분 인용

전부인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본안 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기 각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각 하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8) 결과통지 (별지 제9호의2 서식)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목이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통지
-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법 제18조 제4항)

나. 행정심판 (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1) 제기권자

- 청구인, 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2) 제기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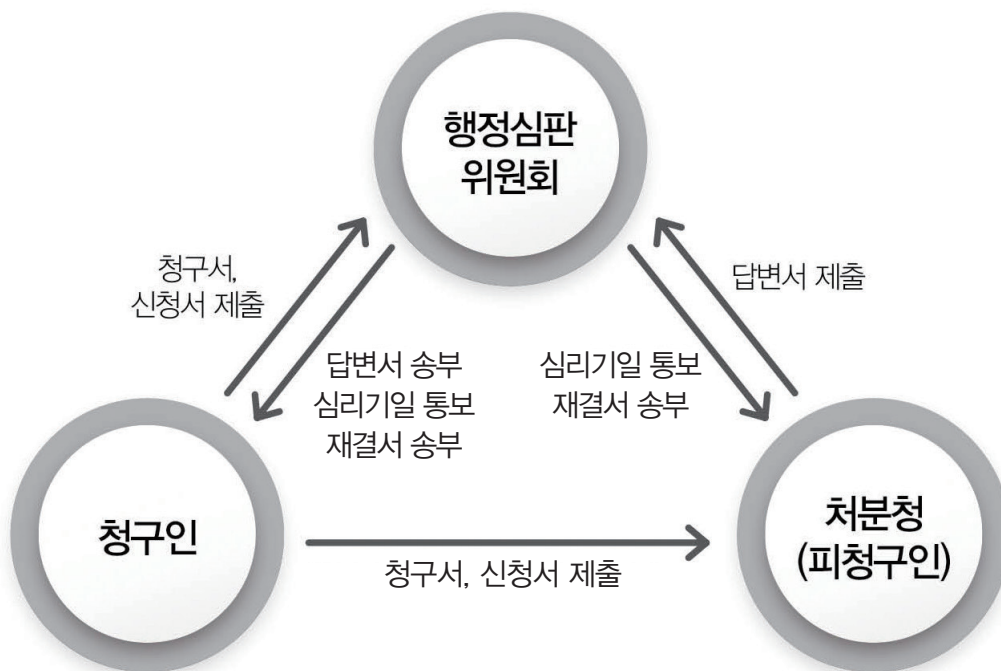
3)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급 상급행정기관

4) 재결 기간(행정심판법 제45조)

-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 가능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

5) 재결방식(행정심판법 제46조)

-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청구의 취지, 이유, 재결한 날짜가 포함
- ※ 행정심판 절차



다. 행정소송 (법 제20조)

행정심판
(청구인 · 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1) 제기권자

- 청구인, 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2)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 피고의 소재지 관할법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법원

3) 제기시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4)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함. 만약 공공기관이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의 실익이 없어지게 됨

III 공개등 결정관련 통지 예시

1 복합청구 시 결정 방법

한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여러 건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있거나, 다중부서 처리 시 결정 방법

- | | |
|----------------------|---------------------|
| » 공개 + 공개 = 공개 | » 부분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
| » 부분공개 + 부분공개 = 부분공개 | » 부존재 + 공개 = 공개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부존재 + 부분공개 = 부분공개 |
| » 공개 + 부분공개 = 부분공개 | » 부존재 + 비공개 = 비공개 |
| » 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 |

2 공개 결정

가. 기안문(예시)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공개 결정 통지	
1. 관련: 정보공개접수번호-00000000(0000.0.00.)호 청구인 00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정보공개에의 청구 방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 결정: 공개 나. 공개 내용: 최근 3년간 붙임 1. 정보공개 청구서 1부. 2.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부. 3. 공개 자료 1부. 끝.		

※ 정보공개 결정 여부를 우편 송부로 희망한 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송부로 갈음하거나 별도 시행문으로 통지하여야 함.

나. 붙임2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예시)

공개대상 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어 공개 가능한 정보 또는 이미 사전공개, 공표된 경우로서 정보 소재 안내로 갈음하거나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지만 유사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 일자	0000.00.00.		
정보공개 결정	공개		
청구정보 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공개 내용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공개 결정 적용 사례1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 일자	0000.00.00		
정보공개 결정	공개		
청구정보 내용	2019년 00 지역 학원이나 교습소 수		
공개 내용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요청하신 정보(학원이나 교습소 수)와 일치한 자료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2019년 00 지역 학원이나 교습소 수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3 유사 공개 결정

청구내용과 일치한 정보는 없으나, 유사한 정보로 갈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 일자	0000.00.00.		
정보공개 결정	공개		
청구정보 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공개 내용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주요 내용) 이 수록되어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4 즉시공개 결정

공개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 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즉시 공개)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 일자	0000.00.00.		
정보공개 결정	공개		
청구정보 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공개 내용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3. 다만, 위의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해당 학교명) 홈페이지(URL 접근경로)에서 누구나 열람·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 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 소재: (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 방법 등 상세 기재)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5.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즉시 공개는 내부결재 없이 정보공개 포털에서 바로 공개 가능함.

5 부분공개 결정

가. 기안문(예시)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접수번호-00000000(0000.0.0.)호 청구인 00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정보공개에의 청구 방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 결정: 부분공개 나. 공개 내용: <공개문 서명> (붙임 자료) 다. 비공개 내용: “비공개 내용” 라.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마. 비공개 사유: “비공개 내용”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1부. 3. 공개 문서명 1부. 끝.		

나. 붙임2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예시)

공개대상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 할 때 보내는 통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 일자	0000.00.00		
정보공개 결정	부분공개		
청구정보 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공개 내용	(대상 문서명)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대상정보)와 일치한 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 요청하신 자료 중 (비공개 대상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 합니다. 3.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호(해당 각호 기재) 4.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 중 (비공개 정보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구체적 사유)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호에 따라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 부분공개 결정 적용 사례 1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 일자	0000.00.00		
정보공개 결정	부분공개		
청구정보 내용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성명, 직위, 운전면허증, 학력		
공개 내용	통학버스 운전 담당 공무원 성명 직위 및 운전면허증 여부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통학버스 운전기사의 성명, 직위, 운전면허증 여부)와 일치한 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그 외 요청하신 자료 중 (운전면허증 관련 개인정보, 학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4. 사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는 공개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특정 공무원의 학력에 관한 정보로 공개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부분공개 결정 적용 사례 2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 일자	0000.00.00		
정보공개 결정	부분공개		
청구정보 내용	00 수련원 운영 특별감사 관련 내용		
공개 내용	감사 결과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00 수련원 운영 특별감사 관련 내용)와 일치한 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그 외 요청하신 자료 중 (감사 관련 내용 중 개인정보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4. 사유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며, 당해 감사가 종결되어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합니다. 하지만 요청 정보 내 포함된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6 비공개 결정

가. 기안문(예시)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접수번호-00000000(0000.0.0.)호 청구인 00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정보공개에의 청구 방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 결정: 비공개 나. 비공개 내용: 000000 다. 결정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내용)은 계약체결 과정·결과 관련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보공개 청구서 1부. 2.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1부. 끝.		

나. 불입2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예시)

(1호)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통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0000000	접수일 0000. 00. 00.
청구내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내용)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청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00000정보는 (법률 또는 법령 및 정보)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 기재)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② 「형사소송법」 제47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④ 「국회법」 제118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공개회의 내용 등(으)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비공개 - 1호 적용 사례 1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㉔ 비공개 - 1호 적용 사례 2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00학교 기초 생활 수급 학생 현황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2호

(2호)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서

접수번호 0000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내용	00000(청구인이 작성한 내용)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청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법률 또는 법령 및 정보)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 기재) ① 보안 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② 대북한 관련 자료 ③ 남북회담 협상 대상 수립 관련 자료 ④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⑤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⑥ 위험물의 저장 위치 ⑦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㉔ 비공개 - 2호 적용 사례1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을지연습 충무 계획 관련 기본계획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3급 비밀로 전시대비 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을지연습의 구체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㉔ 비공개 - 2호 적용 사례2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상수도관 배수 관망 도와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라. 비공개 결정통지서 3호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서

접수번호 000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청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법률 또는 법령 및 정보)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 기재) ① 수사 관계 조회사항 ②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③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④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⑤ 인감 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변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㉔ 비공개 - 3호 적용 사례1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학교 당직 순찰일지 및 경비 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학교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㉔ 비공개 - 3호 적용 사례2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새터민 가정 학생의 내역 및 거주지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공개 시 새터민 보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탈북자의 신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큰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마. 비공개 결정통지서 4호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나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서

접수번호 000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청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나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법률 또는 법령 및 정보)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 기재)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③ 무기·화약·마약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④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⑤ 수형자의 신분 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㉔ 비공개 - 4호 적용 사례 1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학교 폭력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 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나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수사 진행과 관련한 정보로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는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㉔ 비공개 - 4호 적용 사례 2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학교 폭력 소송 관련 청구서 및 답변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소송과 관련한 정보로 공개 시 공정한 진행 및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소송 관련 자료로 공개 시 진행 중인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바. 비공개 결정통지서 5호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통지서

접수번호 000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청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법률 또는 법령 및 정보)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 기재) ①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② 국가고시·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 결과 및 출제위원 명단 ③ 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④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⑤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 ⑥ 임면·복무·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⑦ 보조금·용자 관련 정보 중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비공개 – 5호 적용 사례 1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0000.00.00.자 중등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시험,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로 공개 시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㉔ 비공개 - 5호 적용 사례 2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0000년 제0회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법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정보로 상기 위원회는 교육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폐를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심의 결과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사. 비공개 결정통지서 6호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0000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청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법률 또는 법령 및 정보)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 기재)
 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② 학력·학교 성적·상벌 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
 ③ 소유주택·연봉 등 재산 상황
 ④ 전과기록·교통위반기록·이혼기록 등 법적 정보
 ⑤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⑥ 채용 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⑦ 시험원서 등에 포함된 수험생의 성적·학력 등 개인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㉔ 비공개 - 6호 적용 사례1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00학교 공사 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 인적사항 및 재산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 개인이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㉔ 비공개 - 6호 적용 사례2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00 공무원의 채권 압류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아. 비공개 결정통지서 7호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서

접수번호 000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청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법률 또는 법령 및 정보)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 기재) ① 생산기술 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 ② 경영방침·자금·인사 등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③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④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언업체의 기술평가 결과 ⑤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비공개 - 7호 적용 사례 1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역사 국정교과서 신청 및 취소 학교 명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해당 학교에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어 학생 수업과 지도에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고, 학교 내·외부적 갈등 유발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㉔ 비공개 - 7호 적용 사례 2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 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생산기술 상의 노하우, 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로서 입찰참가자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심사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여 해당 업체(또는 개인)의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 손상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자. 비공개 결정통지서 8호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서

접수번호 00000000	접수일 0000.00.00.
---------------	-----------------

청구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청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법률 또는 법령 및 정보)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 기재) ① 용지매수계약서 ② 설계단가표 ③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④ 물품 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⑤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고시 전의 관련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㉔ 비공개 - 8호 적용 사례 1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계약자의 보험 가입금액, 보험기간, 당해 건축물의 계약 내용(예약 명, 하자 담보 기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영업 활동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㉔ 비공개 - 8호 적용 사례 2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전국 국유림 목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국유림 주변의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 보전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 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6.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7 부존재 결정

가. 기안문(예시)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정보 부존재(또는 공개) 결정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접수번호-00000000(0000.0.0.)호 청구인 000 2. 청구인(000)이 청구한 정보는 우리 교육청(학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다음의 사유(하나 선택)로 인하여 부존재 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보존 기간(작성:날짜, 보존 기간: 몇 년)이 경과하여 현재 폐기된 정보 - 가공, 취합하여야 하는 정보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등 가. 청구인 : 성명 나. 청구내용 : <요약> 다. 공개 결정 : 정보 부존재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1부. 끝.		

나. 부존재 / 진정 · 질의 (예시)

(정보 부존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한 정보의 부존재를 안내하는 통지서 (진정·질의)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하며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 시스템상 통지로 같음

정보공개 청구 외(부존재) 통지서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 일자	0000.00.00.		
청구정보 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통지 구분	(정보 부존재) 통지서		
정보 부존재 사유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 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문서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보 부존재 처리합니다. 3.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아래①~④중 해당하는 사유기재)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 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로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5.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외(진정·질의) 통지서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 일자	0000.00.00.		
청구정보 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통지 구분	(진정·질의 등) 통지서		
진정·질의 사유	① 질의, 진정, 건의 등 민원성격의 청구		
통지내용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 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답변 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정보 부존재 적용 사례 1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제한 구역 혹은 청사 건물(사무실) 출입 기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보 부존재 처리합니다. 3.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문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5.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㉔ 진정·질의 등 적용 사례 1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 일자) 관련입니다.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므로, 신분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증명 발급 민원으로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생활기록부의 온라인 발급(홈에듀 민원서비스, 정부24)은 2003년 2월 졸업생부터 전산화되어있으며, 그 이전 졸업자일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이름 T.000-0000]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IV 기타 결정별 통지 예시

1 이의신청

가. 기안문(예시)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아이 조아 중 경남교육
수신자 (학교)내부결재, (교육지원청 또는 본청)정보공개심의위원장 (경유)	
제목 경상남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1. 관련: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접수번호, 접수 일자) 2. 정보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불임과 같이 요청합니다. 불임 1. 정보공개 청구서 1부. 2. 정보공개 답변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심의요청서 1부. 5. 심의자료 1부. 끝.	

나. 심의요청서 양식

심 의 요 청 서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 결정(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소재지)	
공개 청구(이의신청) 요 지	~~~~~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함	
안 건 명	~~~~~점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전상정사유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담당부서 검토의견		
기 타		
첨부 : 참고자료 00부.		
경상남도교육감 인		
협조자 시 행 - (0000.00.00.) 우 51430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 홈페이지주소 http://gne.go.kr 전화(055-268-) / 전송(055-268-) / @korea.kr / 비공개(5호,6호)		

다. 심의자료 양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개요

1 이의신청인

- 성 명 : 0 0 0 (000000-*****)
- 주 소 : 경남 00시 0000000000

2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청구내용
 - 0000000000000000 (0000. 0. 00.)
- 처리개요
 - 0000. 0. 00.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 0000. 0. 00.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
 - 0000. 0. 00.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3 회신내용

- 청구인이 청구한 '00000000000(0000.0.00.)'에 대하여, 우리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제0조제0항제0호에 따라 00001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므로 비공개 결정·통지함.

4 이의신청 이유

- ~~~~~~
-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함.

5 담당부서 검토의견

- 00000(0000.0.00.)
 - 구체적으로~~~~~
- 00000000(0000.0.00.)

6 담당부서 종합의견

- 청구인이 청구한 '000000(0000. 0. 00.)' 중 000는 공개 가능하며,
- 0000000000는 00000이므로 정보공개법 제0조제0항제0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그 외 정보는 공개 가능함(부분공개)
- 00000000000000(0000.0.00.)은 공개될 경우 ~~~~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0조제0항제0호에 따라 비공개하여야 함.
- 그러므로 최종 부분공개(부분인용)으로 결정되어야 함이 마땅함.

2 이송

가. 이송기관에 대한 기안문(예시)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이송 기관명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서 이송

1.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자)

2. 청구인(000)의 청구 정보는 000000학교 소관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붙임1]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내용: 정보공개청구서 참고

나. 처리방법

구 분	처리 기한	서 식	처리 방법
정보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7일 이내 처리 권장)	[붙임2] 정보 결정 통지서	• 처리기한 산정 : 초일 산입 / 공휴일·토요일 미산입
정보가 없는 경우 등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붙임3]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다.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참조

라. 기타 정보공개 처리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정보 결정 통지서 서식 1부.

3.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서식 1부. 끝.

나. 청구인에 대한 이송통지 기안문(예시)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000(우, 주소 등) "민원인주소 수기입력"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	
1.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자) 2. 귀하의 공개 청구정보를 다음과 같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접수일 및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정보 내용	청구정보 내용 요약 기재
이송기관, 이송일자	이송기관명, 이송일자.
이송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000000학교 소관 정보 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따라 소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다. 이송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일자	0000.00.00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 정보 내용)		
통지구분	타기관 이송		
이송기관	기관 찾기(이송기관 선택)		
이송사유	1.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관련입니다. 청구하신 000정보는 본 기관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은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00.00일자로 해당업무의 소관기관인 000으로 이송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이름 T.000-0000]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⑤ 이송 적용사례1

접수번호	0000	접수일	0000.00.00
청구일자	0000.00.00		
청구정보내용	지구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재난방지 대책		
통지구분	타기관 이송		
이송기관	기관 찾기(이송기관 선택)		
이송사유	1.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관련입니다. 청구하신 지구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재난방지 대책은 본 기관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은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00.00일자로 해당업무의 소관 기관인 000으로 이송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이름 T.000-0000]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3 청구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

청구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경우 청구내용 보완을 위해 청구인에게 보내는 공문(법 제10조 제3항)

– 청구내용에 대한 보완요청 공문 (예시)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000(우, 주소 등) "민원인주소 수기입력"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내용 보완 요청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 징계 공문일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 징계 공문일체'는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우니, 청구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다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청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목록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T.055-000-0000)

4 제3자 의견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제3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알리고 의견 청취를 할 경우(법 제11조 제3항)

–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서 공문 (예시)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000(우, 주소 등) "민원인주소 수기입력"

(경유)

제목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붙임과 같이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T.055-000-0000)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와 관련 내용만 작성, 청구인의 세부 주소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첨부

※ 제3자 의견서: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사용

5 민원이첩 안내문

정보공개 청구건을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시행령 제6조 제3항)

- 민원이첩 안내 공문 (예시)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수신자 000(우, 주소 등) "민원인주소 수기입력"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민원처리 안내

1. 관련 :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자)
2.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 관련입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 청구는 같은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청구는 (청구내용 요약)으로서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민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입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T.055-000-000). 끝.

V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주제어	순
각종계약	16, 21, 53
감사	2, 13, 19, 65, 74
개인정보	11, 13, 21, 26, 67, 68, 74, 76, 77, 78, 81, 83, 95, 99
사전 공개 정보 편집 청구	32
공개여부의 판단	91
공무원 인사, 임용, 비위, 직위 등	1, 38, 44, 50, 55, 63, 83, 97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37
급여	81
내부검토	84, 89
비공개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73
단체협약	27
당직일지	45
도면, 지적도	20, 23, 29
민원	42, 79, 96
반복적 정보공개 거부처분	40
법률자문	28
부분공개 여부	64, 92
부적법한 청구	18
비밀	65, 72, 94, 95
소송	82, 99
수능	80
수사자료	67, 71, 99
시설	3
시험문제	33, 36, 44, 51, 53, 55, 80

주제어	순
식당정보	24
업무추진비	34, 35
연구용역	15
영업상 비밀	29, 58, 86
예산	30, 52, 84, 89
위원, 집필진 등 명단	7, 8, 22, 27, 33, 36, 58, 59, 62, 74, 76
의사결정과정	17, 19, 27, 70, 76, 82
이미 공개받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31
임대	16
입찰	58, 70
재량권	87
재산	12, 61
정보공개 대상정보 정의	25
정보부존재	41, 57, 61, 72, 88
정보의 범위	85
제3자 의견	93
즉시공개	100
처분취소청구	69
출장	2, 57
편집해야 하는 정보 공개거부처분	66
학교 폭력	2, 54, 60, 82, 90
학교운영위원회	16
학교위생정화구역	22, 62
학교회계	3, 14, 61
학원	56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취소	79
회의록	4, 5, 6, 7, 8, 9, 10, 22, 39, 59, 60, 75, 82, 90, 98
CCTV	46, 47, 48, 49

순	요 지
1	시험감독업무 진행중인 공무원 신상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각 고사실 진행 공무원의 직위·성명·소속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각 고사실별로 세분하여 감독관의 직위와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고사실 감독관의 신원이 특정되게 되고, 감독관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감독관으로 참여하더라도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게 되며 정보공개로 인해 시험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6305
2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한 감사계획내부보고, 조사결과보고서, 학교출장일지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한 ① 감사계획내부보고서, ② 중간조사결과보고서, ③ 민원회신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④ 기타 학교출장일지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④에 해당하는 감사담당자 근무상황부는 공개하였으나, ②는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①, ③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바,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살펴보면, 먼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정보 ②는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없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중간조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①, ③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동일한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 관련자들로 그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쉽사리 해당자를 식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공개할 경우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개인의 비밀,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2715
3	운동장 대여비 사용처 공개청구(기각) ○○중학교는 ○○교회로부터 운동장 대여비조로 5천여만원씩 받아 어디에 얼마씩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차장사용료는 학교회계세입예산 과목 중 '사용료 및 수수료' 과목에 편성하여 세입조치하고 있고, 총세입예산에 편성된 후 사용되어 각 세출항목별로 주차장사용료가 얼마씩 사용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신청인 ○○중학교 교장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명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여서 의무이행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순	요 지
3	주차장사용료는 학교회계세입예산 과목 중 ‘사용료 및 수수료’ 과목에 편성하여 세입조치된 후, 다른 세입과목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수입,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기타수입 등과 함께 총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어, 주차장사용료의 사용처에 관한 자료가 따로 보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비, 교직원 기타 보수비 등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항목별 사용액은 총액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보유중인 자료를 검색하거나 편집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사용된 총세출액 중 주차장사용료가 차지하는 액수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피청구인이 주차장사용료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행정심판)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2014-00007
4	개인정보가 있고 특정인을 짐작 가능한 정보가 있는 회의록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은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이 난 기성회비로 건물을 매입한 것은 불법이어서 그 매입과정을 학생들이 상세히 알아야하므로 매입결정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이름, 소속, 직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정보에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특정 의제 즉, △△△△△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 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학교 교무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제공한 정보에는 매입결정에 관계된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5-06307
5	위원 전화번호가 있는 회의록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 회의록과 입학관리위원회 위원의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입학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 입학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매년 입학 배정지역, 학생수 및 학교별 수용능력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므로, 입학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입학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순	요 지
5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동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에서의 발언내용 및 발언자의 인적 사항 등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입학관리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2015-00164
6	재단운영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 이사회 회의록 및 녹취록으로, 이는 ○○ ○○의 예산, 재산취득, 사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 자료이고, 피청구인이 2016. 3. 28.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사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와 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 이사회 회의록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위 재단운영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재단의 이익이 침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2016-00129
7	위원명단을 제외한 순수한 회의내용만 공개청구(인용) 청구인은 심의위원 명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명단이 제외된 순수하게 회의 내용만을 요청한다고 한 점,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의 명단,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특정 발언자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정화위원회 내부의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염려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행정심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2014-00003
8	자문의사 명단 및 자문회의 회의록을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은 자문의사 명단 및 자문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이미 종료된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과정에 참여한 자문의사 명단과 자문회의 회의록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에

순	요 지
8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자문회의에 대하여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자문의사의 심사소견을 장애등급결정서에 그대로 기록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문회의 회의록을 대신하여 장애등급결정서를 공개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에 따르더라도 자문회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 대신 자문의사 소견서와 장애등급결정서 심사결정 내용의 기재사항이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참석한 자문의사 명단이 공개될 경우 자문에 참여한 의사들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유롭고 객관적인 심사 소견 제시를 방해하는 등 공단의 장애등급심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므로, 공정한 장애등급심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사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도 자문의사의 개별적 소견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 정보이고 자문의사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4-16574
9	이미 종결된 사안과 관련된 회의록 공개청구(기각) 의사결정과정에서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서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 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5-13642
10	교무위원회 회의록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5년의 모든 교무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 및 경영상 비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당사자에게만 공개되고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비공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의록 전체 공개는 불가하고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한하여 부분공개 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교무위원회 회의록 으로서 피청구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정이 포함되어

순	요 지
10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특정 사안에 대한 교무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의·의결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다면 교무위원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참여한 위원들의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6-01569
11	문서등록대장 및 개인정보 공개청구(일부인용)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① 1998. 8. 이후 현재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중등장학과·공보감사담당관실)이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덕고등학교와 주고 받은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문서유통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그 내용에는 문서의 제목과 발송 또는 접수일만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2)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②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대덕고등학교 사건 관련 직원 징계(주의 포함) 관련 서류일체는 그 서류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1-04437
12	공공기관의 재산목록 공개청구(기각)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교육재단의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목록의 자료가 명확하게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자료가 공개 된다 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교육재단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재단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3391
13	운영상태, 개인정보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운영상태, 원아의 이름·전화번호·저소득층 자녀인지 여부, 교사의 이름·전화번호·보수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 되거나, 웅변·미술·피아노 등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학원운영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순	요 지
13	더구나 청구인은 이미 전라남도 구례교육청장으로부터 ○○유치원과 관련된 학급증설인가·위치변경인가 서류, 학급편성 및 학생수 현황, 직원 보수일람, 최근 2년간 예산·결산서류,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장학지도 및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를 열람·복사하였으므로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수집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공개거부는 타당하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4-05104
공고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 공개청구(일부인용)	
14	공고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직접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공고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기재된 모든 서류에 대한 정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외 학교법인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취득 및 보관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하는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0-01351
연구용역 수행 중인 정보 공개청구(인용)	
15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및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기관에서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건 정보 중 연구용역의 세부내용까지 전부 공개하는 경우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대자가 각각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연구기관, 용역의 총금액,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개요 등의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4-00738
매점임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상정자료 공개청구(기각)	
16	매점 임대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자료 및 운영위원회 협의록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된 적이 없고, 학교 매점 임대료는 전체 세입예산으로 편성·집행되어 그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2011-00020

순	요 지
17	회의자료, 심사자료 공개청구(기각) 혁신학교 선정을 희망하는 각급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혁신학교 및 그 예비지정교 선정을 위해 작성한 회의자료나 심사자료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 되고, 위 심의자료 등이 공개된다면 심사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 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혁신학교 및 그 예비지정교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과 절차, 심사기준 및 그에 따른 심사 집계표(운영계획서 및 현장실사 점수, 순위, 선정여부 등)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14252
18	정보공개수수료 미납으로 미공개한 건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각하) 피청구인이 2013. 7.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것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17533
19	감사원의 요구사항 공개청구(기각) 이 사건 정보는 단기간에 시정하기 어려운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감사원에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으로서 향후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보호할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09332
20	설계도면 공개청구(기각)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 중 비전자적 형태로 피청구인에게 보유·관리되고 있는 ‘설계도면’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설계도면’은

순	요 지
20	수천 쪽 분량으로 일일이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므로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검토·처리토록 하겠다'고 회신했음에도 청구인이 열람이나 사본·복제물의 교부가 아닌 이 아닌 PDF파일형식의 정보공개만을 일관되게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재량을 그르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행정심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14-00029
21	계약서류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와 계약체결절차에 따른 부속서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체결 후 의무사항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개 자료 중 임차인의 성명, 주소 등의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피청구인이 학교장 직인을 일부 지우고 정보를 공개한 것은 업무상 착오로서 정보공개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공개된 정보로 이미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시 없이도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실시 시 '원본대조필'을 해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어 피청구인이 이 사안을 처리한 부분에 있어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2011-00027
22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 청구(일부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되는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회의록의 공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바, 정화위원회 명단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 보호와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함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화위원회 회의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함이 타당하다. (행정심판)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2011-00035
23	도면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도면은 '현황 및 부근 지적도', '구적도',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로서, 도로·문화재 등 신청지 주변의 여건을 검토하여 신청지가 충전소의 입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도용될 만한 전문정보가

순	요 지
23	포함되어 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면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행정심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13-01133
24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식당 정보 비공개처분취소청구(기각)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 없이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식비를 부담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행정심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2010-00018
25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청구(기각) 이 사건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한 데에 반하여 해당 학교의 전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를 사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고, 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 방법 변경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사본에 의한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방법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행정심판)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2012-00048
26	개인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용·명예·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를 통하여 얻어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14-00260
27	단체협약, TF 구성원명단 공개청구(인용) 청구인이 2012. 5. 10. 피청구인에게 '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1차 내지 18차 실무교섭 종료 후 서명·날인한 결과물 사본, ② 2011년 2월에 발간·배포된 교원업무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접수·생산한 문서 사본, ③ 위 교원업무경감 TF 팀 구성원 명단'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21. 청구인에게 ②번과 ③번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하고, ①번 정보(이하 '이 사건

순	요 지
27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현재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의 단체협약은 2011. 9. 14. 체결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설령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에는 단체협약요구안, 담당과, 교섭결과 등이 나타나 있을 뿐 참석자들의 소속·직위·성명, 발언내용, 교섭 진행과정 등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교섭결과 또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단체협약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만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의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2-11225
28	법률자문질답서 공개청구(기각) 이 사건 피청구인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질의서와 고문변호사의 답변서의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장래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14-00077
29	신축건물 도면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기각) 아파트 신축건물 전자도면에는 아파트의 거의 모든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포함되어 있고 집합건물의 특성상 시설경비 및 보안이 요구되는 점이 많다는 점, 설계·시공자의 창의적인 고안이나 노하우 등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민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거나 설계·시공자의 설계기법과 관련한 지적소유권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 (행정심판)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2012-00122

순	요 지
30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일부인용)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②설립최초월부터 1999. 11.말까지의 대표이사사장 판공비와 월별·항목별 사용내역에는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비롯하여 당해 예산집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부수적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에는 경비집행과 관련한 수령자에 관한 정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직무 수행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달리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 설립목적·인가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0-02200
31	이미 공개받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각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1-03392
32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편집 공개청구(각하)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일반공중에게 조선왕조실록 원문 및 국역문 전체를 전송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단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자료를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편집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 외형이 정보공개청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공공기관에게 서비스 이용상의 불편을 이유로 그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함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1-09020
33	시험문제, 답안, 출제위원 명단 공개청구(인용)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시험문제와 답안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이 제기되자 답변서에서 새롭게 정보공개법

순	요 지
33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 사유로 추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 사유인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이 사건 지침과 새롭게 추가된 처분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당초 처분사유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와 이 사건 지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지침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피청구인 공단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시험문제와 답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문제와 답안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는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여러 형태의 이익제기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문제출제에 있어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출제위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출제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배제하는 등 문제출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지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점, ② 현재 법무부 주관의 사법고시,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고시 및 7급·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위원의 소속(직위)과 명단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출제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제위원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1-08829
34	전국 고등학교의 업무추진비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소재(○○도 제외) 전체 고등학교의 ① 학교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대상기관, 지출일, 지출금액, 지출내용, 지출대상이 학교 내인지 학교 외인지 여부, ② 업무추진비 관련 내부기안문 일체, ③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결의서 일체, ④ 업무추진비 관련 월별 지출(건별, 월별 총 지출금액 포함)내역서 일체, ⑤ 업무추진비 관련 카드전표 일체, ⑥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의 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하도록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고등학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의무가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2-05492
35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공개청구(기각) 1)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등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도 지출의 목적, 범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고 이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순	요 지
35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현금격려나 사례비의 경우 개인의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등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2)업무추진비 등의 지출내역에는 지방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민대표,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및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출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그 지출내역을 공개하면 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언론과 국민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지방교육행정에 참여를 기피하게 되어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한 교육시책을 결정할 수 없게 하고 교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1-00448
36	주관식 논술형 시험 답안내용 공개청구(기각) 이 사건 정보는 ‘모범답안지와 채점기준표,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으로 모범답안지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채점기준표’에는 시험과목명, 문제번호, 출제문제, 모범답안(논점) 및 배점, 출제위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에는 채점위원의 성명, 과목명, 응시자의 임시번호, 문항별 점수, 합계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시험과 같이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평가자들이 응시자가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 실무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 등은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로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검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4-05074
37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공개청구(인용)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2011년도 국고보조금의 각 항목별 세부항목과 그 지출총액에 국한되며, 위 정보만으로는 이 사건 지부가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위 정보가 위 지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지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는 최소한 그 사용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항목과 그 지출총액을 공개한다 하여

순	요 지
37	위 지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01129
38	인사프로필, 진술서 및 경위서 공개청구(기각) 이 사건 정보는 경찰관들의 인사프로필, 진술서 및 경위서 등 제3자 관련 문서들로서 위 정보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감사 및 인사관리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감찰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14427
39	반복적 정보공개 요구 종결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년도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및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 일람표, 2006. 5. 29.자 징계회의록 녹음테이프 복사물을 현장에서 열람 후 직접 수령하겠다는 정보공개 요청을 종결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2004년도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및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 일람표는 2013. 1. 9. 피청구인이 민원회신으로 이미 공개한 점,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징계회의록 및 관련 녹음테이프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의사결정 과정상의 내용에 관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따라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후에 걸쳐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와 연상상에 있는 수차례의 유사한 민원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각각의 민원에 대해서도 회신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반복적 정보공개 요구를 종결처리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처리 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전제하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07529
40	반복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3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와 민원을 접수한 민원실장의 현재 소속, 직위,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인바,

순	요 지
40	이 사건 정보 기록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온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제기 내역으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유사하나 접수일자가 상이한 민원에 대하여 다시금 민원처리기록부와 민원을 접수한 실장의 직위와 성명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청구인이 한 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심판청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할 의사를 확인하기 힘들고,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공익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6-19786
41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각하)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4-12627
42	타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2016. 3. 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번호 1AA-1601-00○○○○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의 정확한 민원신청날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은 타인이 신청한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련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청구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공개 청구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과 다목(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순	요 지
42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이 제출한 민원과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내용이나 작성경위, 민원제출일 등과 같은 관련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민원인 본인의 신분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민원 또는 진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정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6-17291
정보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이행청구(인용)	
4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문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이러한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가 방대하여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응하지 않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하였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7-00708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정보 공개청구(기각)	
44	청구인이 2016. 8. 17.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① 사서직 필기시험 응시자의 성적과 분포, ② 사서직 필기시험 합격자의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면접 결과, ③ 사서직 면접시험의 질문, ④ 사서직 면접 평정결과의 근거가 되는 보조평가서, ⑤ 면접관들의 인적사항'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3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과 면접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점, 종료된 시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하였으나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한 점, 이러한 추상적인 평가기준과 주관적인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면접관들이 개인의 신분노출로

순	요 지
44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평가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평가수행 업무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평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6-25910
당직일지에 기재한 내용 공개청구(각하)	
4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당직총사령실 관련 교육부 사무관이 당직일지에 기재한 내용 사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당직총사령실의 당직일지가 아니라 ‘2016. 10. 8. 당직총사령실에서 근무한 당직자가 상당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당직일지에 기재한 부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내용을 이 사건의 정보로 선행하여 살펴보면, 현장검증결과 당직총사령실의 근무일지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처 당직자가 상당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6-24092
CCTV 영상 공개청구(기각)	
46	이 사건 CCTV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녹화 영상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편집행위를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나 CCTV 제작업체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녹화된 영상을 가공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화면갈무리 기능을 통하여 프레임단위로 동영상을 갈무리한 다음 각각의 프레임을 그림파일 형태의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모자이크처리를 한 뒤 영상압축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새롭게 생산 또는 가공된 정보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리공개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심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2016-00743

순	요 지
	CCTV 녹화자료 공개청구(각하)
47	청구인은 노상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 타이어를 손괴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범죄피해 장소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녹화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담당자의 판단만으로 해당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인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제9조에 따라 보유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미 삭제되어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2-05120
	CCTV 영상 공개청구(기각)
4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유 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도 보존기간 경과로 자동 삭제되어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30일이 경과한 CCTV 영상은 자동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18770
	CCTV 영상 사본 공개청구(기각)
49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 외에도 피청구인 직원과 그 외 다수의 사람들이 녹화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유가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제8호에 따라 추후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 및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제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4-03500
	근무일지, 근무한 공무원의 직위, 성명 공개청구(각하)
50	별지목록 3·4·5·8번①항의 특정일의 교도관 근무일지와 당시 근무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등에 대한 공개청구의 경우, 교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순	요 지
50	의한 비공개정보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다만, 근무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하여 근무일지에서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어 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별지목록 6·7번의 검방시간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별지목록 9번 청구인이 파손한 식기를 변상한 영수증에 대한 공개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현 수용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비공개결정 한 것은 적법·타당하나, 청구인의 수용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개하기로 피청구인이 재결정하여 이 부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머지 별지목록 기재 1·2·8번②항의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분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행정심판) 서울지방법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2011-00004
51	청구인의 필기시험 점수 면접자료 공개청구(일부인용)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인성검사 및 1차면접 전형 자료는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와 평가내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신입사원 채용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행정심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2016-00925
52	예산요구서, 통일외교관계 공개청부(일부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예산편성 당시 피청구인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책정받은 예산지출한도가 적힌 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하여 이후 예산편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정보 ① 중 통일정책, 남북회담, 통일행정지원 부분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 ②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를

순	요 지
52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5-10613
53	임용계약서 외 공채청구(각하,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청구인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당시 기획처장이 읽은 20개 조항의 서면자료, ② 위 20개 조항에 서명 날인한 명부, ③ 청구인과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체결한 임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통보를 하지 않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 ③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 ③을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 ③이 첨부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시간, 장소, 내용의 주체와 객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부만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정보 ①, ②가 공개된다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5-15779
54	학교폭력사건 내부보고서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한 ① 감사계획내부보고서, ② 중간조사결과보고서, ③ 민원회신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④ 기타 학교출장일지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④에 해당하는 감사담당자 근무상황부는 공개하였으나, ②는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①, ③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바,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살펴보건대, 먼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정보 ②는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없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중간조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①, ③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동일한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 관련자들로 그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쉽사리 해당자를 식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순	요 지
54	공개할 경우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개인의 비밀,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2-02715
55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공개청구(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 사무기능직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문제(모든 직급)(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지방공무원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 시험은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의 특성 상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한번 출제된 문제를 다시 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고 출제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게 될 여지가 있고,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 상호 간 시험 난이도 조정 요구가 상충되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2-06607
56	학원교습비 신고 수리업무 및 5급 승진 인사행정 공개청구(기각)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육청의 학원교습비 신고 수리업무 및 5급 승진 인사행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기관내부의 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에는 위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개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사자의견, 조치의견, 조치계획(안)이 기재되어 있는데, 5급 승진업무에 관련된 조사대상공무원 2명의 소속·성명·출신지역·출신학교·근평순위 등과 조사반의 구성인력인 담당 조사관의 소속·직급·성명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서 조사대상인 ○○○교육청의 업무가 위법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보가 결국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결과, 조사자의견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5급 승진업무에 관련된 조사대상공무원 2명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위 조사대상공무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위 조사결과와 주요내용에 대해 민원회신을 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순	요 지
56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조사대상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4-01938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한 정보 공개청구(기각)	
57	이 사건 정보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된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10754
심사위원명단, 입찰업체별 평가표 공개청구(기각)	
5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심사위원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업체별 평가표(심의업체명, 평가자 성명 포함)는 공개될 경우 입찰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입찰업체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및 평가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하드웨어부분 기술력 및 사업관리능력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평가자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0-01558
심사위원명단, 심사결과 공개청구(일부인용)	
59	1)공공기관이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지역교육청 및 소속 학교에서 작성하여 그 중 심사위원명단과 심사결과만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2001년도 서울등서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평가기준, 회의록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 2)심사결과에 대한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 3)심사위원명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정보를 생산한 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2-00004

순	요 지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공개청구(기각)
60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가해학생과 교사들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공개거부는 타당하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1-03910
	정보공개이행 청구(일부인용)
61	1)공공기관은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생산기관에 이송할 것이 아니라 직접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만약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2)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관련자의 성명·소속·직위 등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내용을 통하여도 해당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3)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선덕여자중학교에 대한 것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들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 피청구인이 이들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만송교육재단 및 선덕여자고등학교가 생산한 1997년~2000년 만송교육재단의 법인회계 및 선덕여자고등학교의 학교비회계·육성회비회계 결산서, 만송교육재단의 교육용·수익용기본재산의 목록과 1998년~2000년 사업비보조금지원현황 자료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들 자료가 공개대상인지를 확인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고 또 이들 자료가 명확하게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이들 자료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비공개결정 간주)은 일응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정보공개법시행령 제10조는 이와 같이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정보공개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생산기관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만송교육재단 및 선덕여자고등학교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직접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1-09356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청구(기각)
62	학교환경위생위원회의 위원들의 성명, 소속, 직책, 주민등록번호 등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위원 개인의 신분노출로 인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점, 위원 각자의 소신 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위원회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타당하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1-05920

순	요 지
63	비위행위 공무원 공개청구(기각) 피청구인의 공무원 비위행위 적발은 그 결과를 일반에 널리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사항의 적발을 통하여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 건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 건 정보의 공개 시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개인의 비밀·인격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공무원 비위행위 적발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각 부처의 협조아래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02-07574
64	비공개대상과 공개대상 혼재한 정보 공개거부 처분 취소청구(인용)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주문 기재 방법에서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 두270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65	감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66	편집해야 하는 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순	요 지
67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가각)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소외 1, 2, 3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지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내지 전화번호,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 등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표현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68	지방보조금 사용서류일체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가각) 고속철도 역의 유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69	등사방법으로 공개청구한 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인용) 갑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갑이 등사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70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인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순	요 지
70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는 각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이를 토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고 실시설계적격자에 의하여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정보가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추정금액은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입찰 및 사업자선정을 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 방식 사업의 경우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이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56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71	수사기록 중 의견서 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72	비공개,공개대상 이 혼재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공공기관에 있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에

순	요 지
72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고,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하나의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73	단순히 공개할 필요가 없다하여 비공개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인용) 공개청구된 수기작성조사표는 피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수기작성조사표에 기록된 사항이 정보공개법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어야만 비로소 비공개대상정보가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비공개대상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74	감사적발 유치원 및 원장 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인용) 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정보 중 유치원 명단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하였고 유치원장 성명은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유치원을 검색하면 유치원장의 실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하나 청구인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통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치원 명단 부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치원장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유치원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치원장 명단이 사생활에

순	요 지
74	해당한다거나 공개로 유치원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치원장 성명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 중 유치원장 명단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 인천지법 2018구합52628
7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공개(인용)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함 (행정소송) 2002두 12946
76	2015년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집필진 명단공개 거부처분 취소(기각) 甲이 교육부장관에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게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인 점, 공개 이후에는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집필·심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반면 교육부장관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므로 甲이 주장하는 알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교육부장관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 시점보다 단지 수개월 먼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에 비하여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제반 악영향이 훨씬 크므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 2015구합83061
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인용) 甲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던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서식 제7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령 방법'란이 따로 있음에 비추어 '공개 내용'란에는 공개대상정보의 문서 제목이나 목록과

순	요 지
77	같이 간략한 내용만이 기재되고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의 일시, 장소, 방법에 따라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 甲이 구하는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 2013구합434
78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 (행정소송) 대법원 2011두2361
79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인용) 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甲의 민원처리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위 토지의 불법성토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는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하여,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는 군청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甲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료는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 2010구합3833

순	요 지
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인용)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원자료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 2007두9877
8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기각) 이혼소송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 甲의 배우자 乙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에서 甲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이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소송) 2010두14800
8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기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 2010두2913
83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비공개결정 취소(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순	요 지
83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행정소송) 2006두11910
84	예산편성 시 실과별 예산요구서 정보부분 비공개결정 취소(인용)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 2005구합3273
85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례)법령해석례12-0188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하는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판례)대법원2006두3049,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478
86	비공개 이유제시 의무 행정청은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정당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가 추상적으로만 제시되어 처분의 당사자가 어떠한

순	요 지
86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및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개청구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대전고등법원 2013누848, 대법원2003두1370, 대법원206두4899 행정정보의 어느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현행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이 사건 행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처분사유를 제시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대전고등법원2013누848, 대법원206두4899, 대법원2006두4899
87	공개방법 선택의 재량권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제1항,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례)대법원2001두6425, 대법원2003두8050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있다. (판례)대법원2016두44674

순	요 지
88	정보의 부존재 및 소재에 대한 증명 책임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딘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판례)대법원20010두18918
89	예산편성을 위해 작성 예산요구서 공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대전지방법원2005구합3273
90	학교폭력 재심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판례)대법원2010두2913

순	요 지
	공개여부의 판단
91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 제1항)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6조에서 공공 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판례)서울행정법원2002구합33943,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070
	부분공개
92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 (판례)대법원2003두12707
	제3자의 비공개요청
93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 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순	요 지
93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는 제11조 제3항 (공공기관은 그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면 족하고 그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어서 적법한 처분 근거 및 이유의 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21조 제1항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절차를 거쳤더라도 제3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한 채 한 정보공개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대법원2008두8680,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68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826
법률상 비밀유지의무	
94	‘아동복지법 제65조’는 아동복지사업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각 조항은 비밀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806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95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개인의 삶을 영위해가며 개성을 신장시키기를 바라고 사생활에 관하여 외부적 간섭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헌법재판소2002헌마518,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298

순	요 지
96	민원상담 관련정보 민원상담 내용 중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민원인은 민원상담을 요청함에 있어서 민원상담의 내용이 개인에게 있어서 민감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를 염려하여 비공개요청을 하고 있는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민원상담 내용 중 비공개부분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개인식별정보와 분리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거의 없는 반면, 원고의 명예회복 내지 원고가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의 재판진 을 위하여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221
97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20017-14671
98	심의회 발언자 정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위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례)대법원2002두12946

순	요 지
	소 제기를 위한 정보
99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관련사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 비공개 결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 중 참고인의 주소지는 원고가 참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고,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진 뒤여서 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 된바 없다 하더라도 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참고인의 주소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반면, 참고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부산지방법원2010구합2020
	널리 알려진 정보
100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판례)대법원2008두13101, 대법원2005두8733

